

“산재예방,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

지난 10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과천종합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현황과 그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 업계의 관심이 매우 커졌다. 고 할 수 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고용대책 문제와 함께 산업안전문제가 환노위 의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다.

환노위 의원들은 최근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77조에 달한다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산업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현재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이를 연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도 재해율을 0.6%대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덧붙여 “올해 소규모 건설현장과 영세소규모서비스업 종에서 재해가 다소 늘어났는데, 이 점에서 앞으로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서비스업종의 재해 및 3대 재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일부 지양이양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방이양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관리 강화

앞으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석면 분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분진발생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등의 손상, 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재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재재를 덮어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장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재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유해 작업장에서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도 담겨 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는 한편 석면 분진관련 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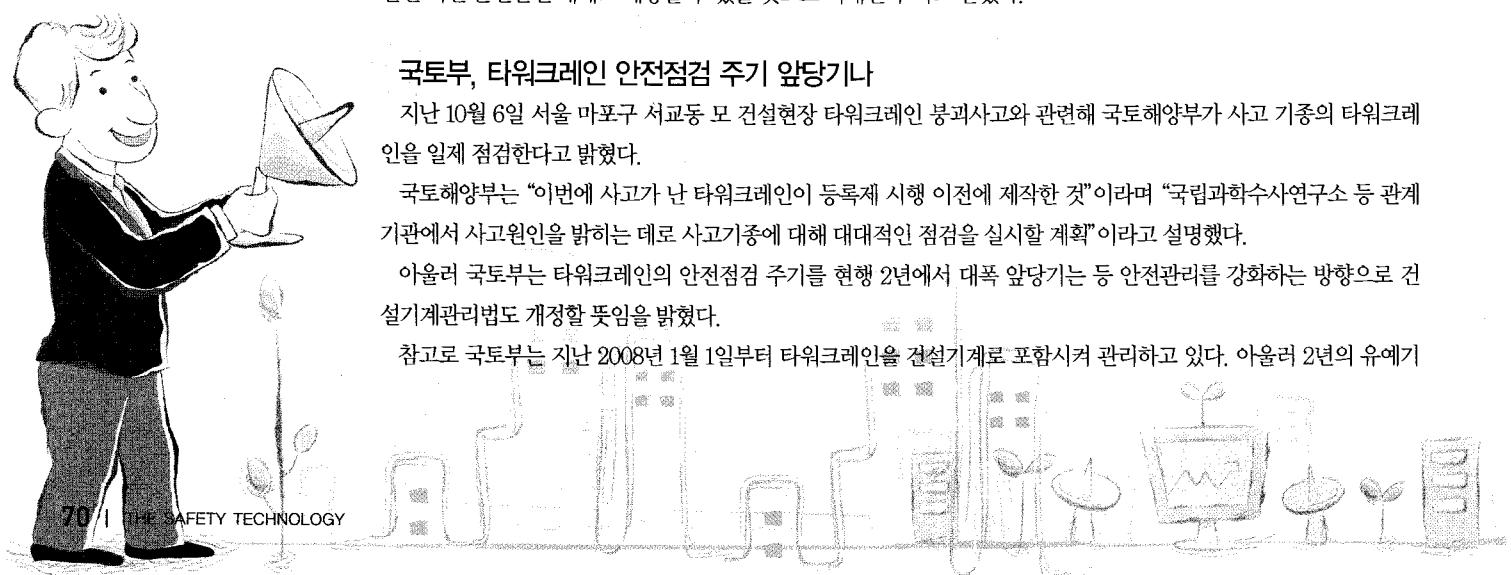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주기 앞당기나

지난 10월 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사고 기종의 타워크레인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등록제 시행 이전에 제작한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관계 기관에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로 사고기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대폭 앞당기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할 뜻임을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년의 유예기



간을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의 사업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타워크레인 등록제'도 본격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해화학물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령상 지정된 관리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이라도 유해성·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통해 규제 대상으로 편입 또는 재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구축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그리고 이를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 등과 함께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절차와 내용, 방법 등 마련 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외부 전문기를 중심으로 한 업무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존 또는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빨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 산업단지, 재해 피해액 1,000억 이상

최근 5년간 전국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10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화재, 정전, 폭발 등)로 인한 피해액이 총 1,0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174명(사망 34명)이었다.

사고발생 유형으로는 화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안전사고(30건), 정전(12건), 폭발(8건)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사고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라며 "시급히 실효성 있는 사고 및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안기능 지방이양, ILO에 제소할 것"

민주노총이 산업안전보건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항을 2011년경 ILO에 제소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0월 8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국가 관리감독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측은 "국가와 정부는 근로자의 생명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업무의 특성상 전국적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과 감독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바 중앙정부가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은 "이 사안을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81호를 위반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지방이양 계획을 지난 3월 11일 재가한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인 데다가,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19개 기능 125개 단위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추가적인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국가 정책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지 말고 불법적인 이양사업 추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 본격 가동

석면안전관리법 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0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오면서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앞으로는 석면안전관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번에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을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